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89

제출연월일 : 2009. 5. 6.

발 의 자 : 장정옥의원외 3명

1. 제정 이유

- 지식기반사회와 정보화 사회의 진입으로 개인의 학습능력이 사회적 능력을 높이는 기준이 됨에 따라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능력으로써 문해교육의 필요성 증대
-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진흥 책무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활성화하는 토대 마련
- 저학력 교육 소외집단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국민기초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

2. 주요내용

- 성인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과 지역사회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안 제3조)
-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은 인간 생활의 기본 전제로써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안 제4조)
-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은 비문해자 조사, 연수지원,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행사개최 등을 하여야 한다. (안 제5조)
-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7조)

3. 근거법규

-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 평생교육법 제5조, 제7조, 제16조, 제39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7조, 제16조, 제3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 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 해독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 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을 기르는**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과 지역사회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 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써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기른다**.

② 성인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구청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무)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지원
4.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5.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을 기르기** 위한 문해행사 개최

제6조(공동추진)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성인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 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89)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5. 6(수)

나. 제출자 : 장정옥 의원 외 3명

다. 위원회 회부 : 2009. 5. 11(월)

라. 위원회 상정 : 2009. 5. 15(금)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장정옥 의원)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생활 보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기회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성인 문해교육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과 지역사회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함.(안 제3조)

나. 성인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갖도록 함.(안 제4조)

다.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

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안 제5조)

-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 2)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 3) 성인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지원
- 4)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보급지원
- 5)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을 기르기 위한 문해행사 개최

라.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해당 교육청 등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성인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 요청시 지장이 없는한 허용함.(안 제8조)

바. 성인 문해교육 교사강시를 양성하며 각종 연수 활동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조)

5. 관련법규

가. 「교육기본법」

나.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6.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홍성춘)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이 2008년도에 전국의 19~79세 성인 12,137명을 대상으로 기초 문해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7%인 약 62만명이 글을 읽지 못하는 비문해자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 가운데 울산시의 경우 0.3%인 2,400 여명이 비문해자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사회 편견 등을 감안 할 때 비문해자의 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비문해율은 이전의 '문맹률'을 대체하는 단어로 신문기사, 안내문, 광고 등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냄.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및 자녀들의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기본적인 삶의 인권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해교육의 기회 제공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주요 제정 내용으로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과 정의, 대상,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중구청장의 임무와,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필요한 경비와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 평생교육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지만 사회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에 비해 대상자 수가 적고,
- 사회적 편견 등으로 소홀해 질 수 있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특화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의 평생교육 영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